

1.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칙

제정	1972. 3. 9.	규칙	제 250 호
제 1 차개정	1973. 6. 22.	규칙	제 291 호
제 2 차개정	1974. 1. 1.	규칙	제 297 호
제 3 차개정	1974. 12. 3.	규칙	제 314 호
제 4 차개정	1975. 10. 25.	규칙	제 351 호
제 5 차개정	1977. 1. 17.	규칙	제 455 호
제 6 차개정	1977. 12. 29.	규칙	제 474 호
제 7 차개정	1981. 4. 27.	규칙	제 495 호
제 8 차개정	1982. 2. 19.	규칙	제 30 호
제 9 차개정	1983. 1. 5.	규칙	제 44 호
제 10 차개정	1983. 3. 15.	규칙	제 46 호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 본 대학은 방송과 통신 등에 의한 교육방법으로
고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
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 칭) 본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 (이하 " 대학 " 이라 한다)
이라 칭한다.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 본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
과 같다.

1.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학사과정이라 한다.
2. 교육법 제 128 조의 2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

이수하는 과정을 전문대학과정이라 한다.

3. 본 대학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조교이상의 교원을 전임교원이라 한다.

제 4 조 (학과 의 설 치) 학과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제 1 조의 목적에 부합되고 본 대학 및 각 협력학교의 교육환경과 수용능력 등 여건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전임교원의 소속) 본 대학의 전임교원은 그 전공에 따라 각학과 (교양학과 포함) 또는 부속연구소에 소속한다.

제 6 조 (학생의 소속) 본 대학의 학생은 본 대학의 1개학과에 한하여 학적을 가지며, 출석수업은 협력학교에 출석하여 수강한다.

제 2 장 교 육 조 직

제 7 조 (과정 및 설치학과) ① 본 대학에 학사과정과 전문대학과정을 둔다.

② 본 대학에 초등교육과 · 유아교육과 (전문대학과정) · 영어과 · 중국어과 · 불어과 · 법학과 · 행정학과 · 경제학과 · 경영학과 · 농학과 · 가정학과 및 전산통계학과를 둔다.

제 8 조 (학과별 입학정원) 본 대학의 학과별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

다만, 입학정원의 30%이내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.

과 정	학 과 명	입 학 정 원
학 사 과 정	초 등 교 육 과	4,000 명
	영 어 과	3,000 명
	중 국 어 과	2,000 명
	불 어 과	2,000 명
	법 학 과	3,000 명
	행 정 학 과	4,500 명
	경 제 학 과	2,500 명
	경 영 학 과	4,500 명
	농 학 과	3,000 명
	가 정 학 과	3,500 명
	전 산 통 계 학 과	2,000 명
전문 대학 과정	유 아 교 육 과	1,000 명
계		35,000 명

제 9 조 (학과장) ① 각 학과에 학과장과 교양과목을 관장할 교양학
과장을 두며, 본 대학장이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겸보한다.

② 학과장은 소속 전임교원을 통솔하고 학사과정과 전문대학과정에
속한 학생의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학장을 보좌한다.

③ 학장은 학과장에게 소관사무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제 10 조 (교수회) ① 학사과정과 전문대학과정의 학사운영에 관한 중

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.

②교수회는 제 9 조에 규정된 학과장 및 보직교원과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구성하되 의장은 학장이 된다.

③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규정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
2. 입학,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
3. 교재편찬 및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사항
4. 각종 고사에 관한 사항
5. 특수강좌 및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학생지도와 장학, 포상, 징계 및 후생에 관한 사항
7.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
8. 인사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9.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교육상 중요한 사항
10. 기타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 3 장 부속시설 및 부속연구소

제 11 조 (부속연구소 및 부속시설) 본 대학에 방송통신교육연구소와 도서관, 전자계산실 등의 부속시설을 둔다. 다만, 도서관은 필요에 따라 협력학교에도 둘 수 있다.

제 12 조 (부속시설 및 부속연구소의 기구조직) 제 11 조의 부속시설 및 부속연구소의 기구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4 장 관 리 조 직

제 13 조 (학 장) 학장은 본 대학의 행정을 통괄하고, 학생을 교육지도하며, 소속 교직원을 지휘 통솔하고 대학을 대표한다.

제 14 조 (행정조직) ①본 대학에 교학처와 서무과를 두고, 교학처에 교무과, 수업과 및 학적과를 둔다.

②교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겸보하며,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, 그 외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학과의 설치·폐지
2. 입학 및 정원관리
3.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재의 편찬
4. 교원의 인사관리 및 연구활동 지원
5. 기타 처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④수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방송강의 계획수립 및 운영
2. 출석수업 및 과제물 지도
3. 수강신청 및 성적관리
4. 협력학교의 운영

⑤학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등록·수료·졸업 등 학적업무
2. 학력증명발급 및 학사상담
3. 학생 및 학생단체의 지도

4. 장학 및 징계

⑥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보안·인사(교원의 인사를 제외한다) 관인관수 및 문서관리
2. 제규정의 심사
3. 예산 및 결산
4. 물품 및 재산관리
5. 기타 교학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제 15 조 (학과장회) ①본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장회를 둔다.

②학과장회는 학장, 제 9 조의 각 학과장, 제 14 조의 각 과장으로 구성하며, 의장은 학장이 된다.

③학과장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본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업무
2. 제 10 조 제 3 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중 일반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5 장 운 영 위 원 회

제 16 조 (목 적) 본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 17 조 (구 성)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, 각 1 인을 포함하여 15 인이내로 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
제 18 조 (기 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관계법규 개폐에 관한 사항
2. 대학육성, 방안에 관한 사항
3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 19 조 (직 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20 조 (회 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1 조 (간사와 서기) ①위원회에 간사, 서기 각 1 인을 둔다.

②간사와 서기는 본 대학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.

제 22 조 (수당과 여비 등) 본 대학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

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6 장 기 타 위 원 회

제 23 조 (삭 제)

- 제 24 조 (기획위원회 등) ① 본 대학의 기획·교육과정운영, 교재편찬 및 학사운영에 관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기구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7 장 학년과 학기 및 출석수업일수

제 25 조 (학년과 학기)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.

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매학년 2 학기로 한다.

제 1 학기 : 3월 1일 - 8월 31일

제 2 학기 : 9월 1일 - 익년 2월 말일

제 26 조 (출석수업일수) ① 본 대학은 하기 및 동기에 본 대학 및 협력학교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출석수업을 실시한다.

② 매학년 출석수업기간은 2 주 이상으로 한다.

③ 학생은 반드시 본 대학에서 지정하는 협력학교에서 출석수업을 받아야 한다.

제 8 장 입학과 등록

제 27 조 (입학시기) 입학시기는 매학년 초 30 일 이내로 한다.

제 28 조 (입학자격) 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
2.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
3.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
4. 외국에서 12 년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

제 29 조 (입학전형) 본 대학의 입학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전형기준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30 조 (입학지원 구비서류와 전형료) ① 입학지원에는 지원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교의 졸업증명서
2.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교의 성적증명서, 다만, 부득이하여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3. 기타 전형에 필요한 서류

② 이미 제출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31 조 (등록)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납입금을 불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.

③ 재학생은 매학기초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절차에 의한 등록을

완료하여야 한다.

제 32 조 (수강신청) ① 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일단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학장의 허가없이 변경할 수 없다.

③ 수강신청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33 조 (편입학) ① 편입학은 2학년 또는 3학년에 한하여 여석이 있을 경우에 본대학에서 구성하는 전형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편입학 선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는 정원의 30%이내에서 추가로 선발 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(교)의 졸업정원제로 인하여 중도에 수료한 자중 수료전 대학(교) 총(학)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원외로 편입학 허가할 수 있다.

③ 편입학 학년은 편입학 전에 수학한 대학(교)에서 교과목별로 취득한 학점과 편입학할 학과에 설정된 교과목별 학점등에 관하여 제 1 항의 전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.

④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34 조 (삭제)

제 9 장 수업 및 재학년한, 교과과정학점 및 졸업

제 35 조 (수업 및 재학년한) ① 본 대학 학사과정의 수업년한은 5년으로 하되, 재학년한은 10년으로 한다.

다만, 4년이상을 재학한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조기이수하고 졸업학력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수업년한에 달하기 전에 졸업할 수 있다.

②본 대학 전문대학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하되, 재학년한은 5년으로 한다.

③전 각항에 규정된 재학년한은 부득이한 경우 학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 36 조 (교과과정) ①본 대학의 교과는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한다.

②일반교양과목과 각 학과의 교과과정표는 별표 1과 같다.

제 37 조 (교과과정의 편성)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38 조 (방송강의 및 출석수업시간표) 방송강의 시간표는 매학기 개시전에 학장이 결정하여 공포하고, 출석수업 시간표는 각 협력 학교장이 개강전에 정하여 공고한다.

제 39 조 (학 점)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방송교육, 통신교재교육 및 출석수업을 종합하여 1학기간 1주 1시간에 해당하는 이수를 1학점으로 한다.

제 40 조 (이수학점) ①학사과정은 소정의 교과를 이수하고 140 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문대학과정은 소정의 교과를 이수하고 80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
②학사과정은 매학기 16 학점까지, 전문대학과정은 21 학점까지 취

특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사과정의 학생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다.

1. 교과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
2.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+ 이상일 때
3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

제 41 조 (학점별 학년구분) 학점에 의한 학년구분은 다음과 같다.

취 득 학 점		학년구분
학 사 과 정	전 문 대 학 과 정	
28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	40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	1 학년
29 학점 이상 56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	41 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때.	2 학년
57 학점 이상 84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		3 학년
85 학점 이상 112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		4 학년
113 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때		5 학년

제 42 조 (졸업, 졸업증서교부 및 학위수여) ① 본 대학에서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력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(1) 의 졸업증서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 다만 졸업학력평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(2) 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② 본 대학에서 전문대학 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소정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(3) 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③ 학사학위 종별은 교육법 시행령 제 123 조 제 1 항 규정에 의하고, 해당학과의 졸업학력평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10 조 시험과 성적

제 43 조 (시험) 시험은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.

제 44 조 (성적평가) ① 학생의 학업성적은 필답고사 성적, 출석수업을 통한 성적 및 과제물 평가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

② 필답고사는 원칙적으로 매학기의 출석수업중에 실시한다.

③ 과제는 교과목별로 지정한 시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매학기의 교과목별 출석수업에서 4분의 1 이상 결강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.

제 45 조 (등급의 평점)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그 등급과 평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.

등	급	평	점
	A ⁺		4.3
	A ⁰		4.0
	A ⁻		3.7

	B ⁺		3.3
	B ⁰		3.0
	B ⁻		2.7

	C ⁺		2.3
	C ⁰		2.0
	C ⁻		1.7

	D ⁺		1.3
	D ⁰		1.0
	D ⁻		0.7

	F		0.0

제 46 조 (성적사정) 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D⁻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,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은 1.7(C⁻)을 기준으로 한다.

② 이미 이수한 교과목(D⁺ 이하인 교과목에 한함)을 재이수할 때는 그 전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무효로 한다.

제 47 조 (추가시험)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력학교를 경유 본 대학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추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③추가시험에 필요한 고사료는 별도로 징수한다.

제 11 장 휴학, 복학 및 제적

제 48 조 (휴 학)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못 하였을 때는 재학년한 내에서 휴학 처리된다.

제 49 조 (복 학) 휴학 처리된 자는 등록기간중에 등록함으로써 복학처리된다.

제 50 조 (삭 제)

제 51 조 (제 적)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된다.

1. 재학년한이 경과된 자
2.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
3. 원에 의하여 자퇴한 자

제 12 장 과 외 활 동

제 52 조 (과외활동) 본 대학의 학생은 학장 또는 협력학교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과외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 53 조 (금지활동) 본 대학 학생은 학내에서 정치적인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성토, 시위, 농성, 수업거부, 불온인쇄물의 발간, 배포, 첩부 등 교육 및 학내질서 유지에 배치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 54 조 (간행물) 학생단체가 정기, 부정기의 간행물을 발간 또는

배포코자 할 때는 지도교수의 동의와 지도교수가 소속해 있는 대학본부 또는 협력학교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협력학교 책임자는 이를 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 55 조 (학우회 설치) 면학풍토를 조성하고 학생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학우회를 둘 수 있으며, 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56 조 (학생지도)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는 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여야 하며, 개별상답에 응해야 한다.

제 13 장 포상과 징계

제 57 조 (포 상) ① 학생으로서 재학중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우등상,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상 등을 재학시 또는 졸업시에 학장이 수여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학생포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58 조 (징 계) ① 학장은 학생의 본분에 어그러진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학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수업기간중에는 징계권의 일부를 각 협력학교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제 52 조 내지 제 54 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학장 또는 협력학교 책임자가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할 수 있다.

③징계의 종류는 근신, 정학, 제명으로 구분하되,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④본 대학 또는 타대학(교)에서 학칙 위반으로 제명 또는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.

제 14 장 납 입 금

제 59 조 (납입금)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시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.

② 수업료에 관하여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.

③ 납입금은 결석,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.

제 60 조 (수업료 면제)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다른 법령의 면제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 61 조 (실험실습비) 실험과 실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한다.

제 62 조 (납입금의 반환) 이미 납입된 금액은 과오로 인한 납입의

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15 장 장 학

제 63 조 (장학금) 본 대학 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본 대학 장학금 급여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6 장 위탁생 및 공개강좌

제 64 조 (위탁생) 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소속장관이 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위탁생으로 추천한 경우와, 문교부 산하 교육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중, 문교부장관이 추천하였을 때에는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위탁생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위탁생이 수학중 징계에 의하여 퇴직하였을 때에는 제적된다.

제 65 조 (공개강좌) ① 본 대학에 교양 또는 직무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을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
②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17 장 기 타

제 66 조 (시행세칙)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(1972.3.9 규칙 제 250 호)

이 학칙은 197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73.6.22 규칙 제 291 호)

이 개정학칙은 197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졸업사정에 있어 이 학칙개정 이전의 취득한 A, B, C, D는 그 실점에 따라 개정학칙의 등급과 평점을 참작하여 해당등급으로 사정한다.

부 칙 (1974.1.1 규칙 제 297 호)

이 개정학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74.12.3 규칙 제 314 호)

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인가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 16조 및 제 18조의 규정은 197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 1조 및 제 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졸업소요학점 87-100학점의 범위내에서 학장이 조정할 수 있다.

부 칙 (1975.10.25 규칙 제 351 호)

이 개정학칙은 인가일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77.1.17 규칙 제 455 호)

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197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 13 조의 규정은 1977 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1977.12.29 규칙제 474 호)

이 학칙은 197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1.4.27 규칙제 495 호)

①(시행일)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학칙시행이전에 입학하여 전문대학과정에 제적중인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이 학칙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, 재입학할 수 있는 년한에 관하여는 종전학칙을 적용한다.

부 칙 (1982.2.19 규칙제 30 호)

①(시행일)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 8 조에 규정한 학과별 입학 및 '학년정원중 3 학년 편입학 정원은 1982 학년도에 한하여 모집한다.

부 칙 (1983.1.5 규칙제 44 호)

①(시행일)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이수학점에 대한 경과조치) 1982 학년도 3 학년에 편입한 자의 졸업기준학점은 제 40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 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③(학과별 입학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학과별 입학정원중 중국어과 및 불어과는 1984 학년도 부터 학생을 모집한다.

④ (재학년 한에 대한 경과조치) 1981 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는
본 학칙의 적용을 받고, 1980 학년도 이전 입학한 자는 1988 년
2 월말일까지 재학할 수 있다.

부 칙 (1983.3.15 규칙 제 46 호)

이 학칙은 1983 년 3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1)

제 호

졸업증서

본 적 :

성 명 :

19 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과정 (전공) 을 이수하고
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
수여함.

19 년 월 일

한국방송통신대학장 (인)

위는 교육법 시행령 제 1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음을 증
명함.

19 년 월 일

문 교 부 장 관 (인)

학위등록번호 : _____

(별지서식 2)

제 호

수 료 증 서

본 적 :

성 명 :

19 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과정 (전공) 을 수료
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.

19 년 월 일

한국방송통신대학장

(인)

제 호

졸업증서

본 적 :

성 명 :

19 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 학과에서 전문대학 과정을
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함.

19 년 월 일

한국방송통신대학장

(인)